

문서번호	감사실-2475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8.04.19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63호

★선임	팀장	감사실장	감사직무대행	이사장
협 조				

- 「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개정 관련 -

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(안)

2018. 4.

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(안)

「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·시행코자 함.

※ 기획조정실 심의 및 사규개정예고('18. 4. 6. ~ 4. 10.) 완료

I 추진 방향

○ 「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준용

- 관련근거 : 『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』 (市 감사담당관-977('18.01.17)호)

『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』 (권익위 행동강령과-376('18.2.28.)호)

II 개정(안) 주요내용

①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(안 제4조의2)

-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·조언·자문 제공 후 대가 수수, 법인 등의 대리, 다른 기관에 취임 등 금지

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(안 제6조)

- 임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인일 경우 이사장에 서면 신고, 필요시 직무 재배정 등 조치
-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

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(안 제6조의2)

- 임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
 - ☞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

④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(안 제6조의5)

- 재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공단 퇴직자(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)와 사적 접촉 시 신고

⑤ **가족 채용 제한 (안 제7조의3)**

- 임원 가족을 공단에 채용하는 행위 금지 : 인사 담당자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
 - ☞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

⑥ **수익계약 체결 제한 (안 제7조의4)**

- 임원 및 그 가족은 공단과 수익계약 체결 금지 : 계약 담당자, 가족도 체결 금지
 - ☞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단이 수익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

⑦ **알선·청탁 등의 금지 (안 제14조 제4항)**

-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, 청탁 등 금지 : 인사, 징계, 입찰, 계약, 조사 등

⑧ **사적 노무 요구 금지 (안 제17조의3)**

-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동력 제공받는 행위 금지

⑨ **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(안 제22조)**

-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, 물품 등 계약 체결, 부동산 등 거래시 서면신고
 - 직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사용 금지(부득이한 경우 서면신고)에서 직원과 배우자, 직계존비속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위 거래 시 서면신고로 완화

⑩ **기타사항 :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보다 “강화” 중인 규정 유지**

	청탁금지법 시행령 ('18.1.17.시행)	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(현 행 유 지)
선물 등의 가액 범위	· 5만원 · 단, 『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』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<u>농수산물</u>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<u>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</u>	· 5만원 · <u>단서조항 없음</u> (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인 경우도 5만원 이내)
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	· 임직원 <u>직급에 따른 상한액 구분은 없애고</u> ,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	· 임직원 <u>직급에 따른 상한액 구분 유지</u> · 이사장 : 40만원 임 원 : 30만원 그 외 직원 : 20만원

- 외부강의 등 보완신고 기간 : 안 날부터 2일 이내 →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

Ⅲ

향후 추진일정

- 방침수립 : ~`18. 4. 16.
- 공포의뢰(→기획조정실) : ~`18. 4. 17.
- 공포·시행 : ~`18. 4. 17.

따로붙임 : 1.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(신·구조문 대비표 포함) 1부.
2.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규정 전문 1부. 끝.